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11. 2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2년 10월 21일

나. 발 의 자: 유승용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2년 10월 26일

라. 상정일자: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2. 10. 3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유승용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관내에서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할 때 점용도로가 보호구역으로 포함 된 경우 추가 보완사항을 교통소통대책에 반영하고, 「도로법」 개정 사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불이익에 대한 처분을 고발조치에서 과태료 부과로 경감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(안 제1조, 안 제2조)
-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점유하는 도로공사 시 통행로 확보 등 추가적인 안전대책 요구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5조)

-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구청장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고발조치에서 과태료 부과로 변경 (안 제11조)
-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최종란)

- 본 조례안은
 - 「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」 개정으로 도로점용공사 구간에 보호구역이 포함된 경우 추가적인 안전대책 요구가 가능해짐에 따라,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- 주요 내용은
 - 안 제1조에서는 도로점용공사 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「도로법 시행령」의 개정으로 「도로법 시행령」 별표1 제4호를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나목으로 변경하였고,
 - 안 제5조에서는 「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,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도로점용공사 구간에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통행 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,
 - 안 제11조에서는 「도로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, 공사시행자가 구청장의 시정명령을 위반 시 조치사항을 「도로법」 제99조제2호를 적용한 고발조치에서 「도로법」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개정하였으며,
 - 그 밖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 정비하였음.
- 본 조례안은
 - 「도로법」 및 「도로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, 「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, 도로점용공사 구간에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어

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통행로의 안전시설 확보 등의 사항을 교통소통대책에 추가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유승용 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|
| 의안 번호 | 47 |
|----------|----|

발의연월일 : 2022년 10월

발의자 : 유승용, 이순우, 최인순,
임헌호 의원(4인)

1. 제안이유

관내에서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할 때 점용도로가 보호구역으로 포함된 경우 추가 보완사항을 교통소통대책에 반영하고, 「도로법」 개정사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불이익에 대한 처분을 고발조치에서 과태료 부과로 경감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적용대상공사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의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5조제2항)
- 나. 구청장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“고

발조치”에서 “과태료 부과”로 변경 (안 제11조)

다. 기타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정비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로법」 「도로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2. 10. 18. ~ 10. 24.)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도로법시행령」 별표1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도로법시행령」 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란 제3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 한다.

1. “도로”란 「도로법」 제14조에 따른 “특별시도”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“구도”를 말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구도”를 “구도”로, “특별시도”를 “특별시도”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도로”를 “그 밖에도 도로”로, “제1호 내지 제3호”를 “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

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구청장은 적용대상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, 교통소통대책에 해당 구역을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20이상”을 “20 이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공사구역내”를 “공사 구역 내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6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본문 중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제3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조에 따른”으로, “제2호”를 “제1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0조에 따라”로, “제99조제2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”를 “제1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”로 한

다.

제13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,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의 적용 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(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)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공사로 한다.

1. ~ 3. (생략)
4.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공사

제4조(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)

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~ 6. (생략)

-----.

제3조(적용대상) -----

----- “구도” -----

----- “특별시도” -----
----- 각 호 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그 밖에 도로--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-----

제4조(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)

① -----

----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-----
-----.

② 제1항에 따라 -----
----- 각 호 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교통소통대책의 검토) (생략)

<신 설>

제6조(교통소통대책의 변경) 공사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내용과 그 내용에 따라 수정된 교통소통대책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
2. (생략)
3.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

제5조(교통소통대책의 검토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구청장은 적용대상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, 교통소통대책에 해당 구역을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(교통소통대책의 변경) ---
----- 각
호-----

-----.

1. ----- 20 이상

2. (현행과 같음)
3. 공사구역 내 -----

4. (생략)

제7조(대행자지정)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영향평가대행자(이하 “대행자”라 한다)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회 구성·운영) ①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(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) 이하, 구도는 15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제2항 제2호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약식절차로 위원회의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

4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대행자지정) -----

-----제26조에 따라-----

-----.

제9조(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--

--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-----

-----제3조에 따른-----

--- 제1호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각 호의 어느 하나에-----
-----해당하는 사람-----

